

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6
----------	----

제출일자 : 2001. 12. 4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한편,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등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는 주민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차시설의 설치를 촉진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에 “관광휴게시설”을 추가함(안 제15조제2항)

나. 단독주택, 공동주택 등 기존 주택의 담장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9조의2)

3. 참고 사항

가. 관련 법령 :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,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5항

나. 예산 조치 : 주차장특별회계

다. 입법 예고 : 2001. 11. 10~11. 29(주민 제출의견 없음)

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항중 “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”을 “판매시설, 관람집회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”로 한다

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2(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보조) ① 법 제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설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단독·공동주택 등 기존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
2. 이웃간의 경계 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개설하는 자
3. 자기 소유의 주택내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설치하는 자

② 제1항의 보조금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치 완료시 지급하되, 지급기준은 구청장의 별도지침에 의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~제14조 (생 략)</p> <p>제15조(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) ①(생 략) ②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근린생활시설, 자동차 관련 시설, 근린공공시설, 업무시설, 운동시설, 전시시설, <u>판매시설 또는 관람 집회시설</u>로 한다.</p> <p>제16조~제19조(생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1조~제14조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5조(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판매시설, 관람집회 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-----.</p> <p>제16조~제19조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9조의2(부설주차장설치비용 보조) ① <u>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설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단독·공동주택등 기존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 하는 자</u> 2. <u>이웃간의 경계 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개설하는 자</u> 3. <u>자기소유의 주택내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설치하는 자</u> <p>②제1항의 보조금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치 완료시 지급하되, 지급 기준은 구청장의 별도지침에 의한다.</p>